
민원 회신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환경팀장 전운일입니다.

먼저 THAAD 체제 배치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THAAD 체제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방부 환경팀 (02-748-58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